

# 2025년 재외교육기관 회계 실태점검 사례집

2026. 4.



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이 사례집은 AI Tool을 활용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 목 차

## I. 개요

1. 목적 및 추진경과 ..... 1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 2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 4
4. 주요 점검 항목 ..... 5

## II. 2025년 실태점검 주요 점검 사례

1. 유형별 지적 사항 ..... 6
2. 점검 항목별 오류사례 ..... 7

# I. 개요

## 1. 목적 및 추진경과

### 1) 추진 목적

- 재외 한국학교 실태점검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 재무·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2) 추진 경과

-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6개교에 대한 회계 실태점검 실시

<연도별 재외한국학교 실태점검 추진 현황>

(단위:개교)

연도	현장점검교	서면점검교	점검교 합계
2025	5	5	10
2024	3	5	8
2023	5	5	10
2022	3	7	10
2021	-	7	7
2020	-	10	10
2019	6	-	6
2018	5	-	5
합계	27	39	66

<'25년 재외 한국학교 실태점검 추진 경과>



##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1

### 실태점검단 구성 방법

- 재단인력 (1~2인) 및 외부 전문가\* (2인)로 실태 점검단 구성

\* 외부전문가는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경험있는 회계 법인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2

### 대상교 선정 방식

- 점검 주기가 2년을 초과하였거나 민원이 발생했던 한국학교 위주로 교육부에서 선정

#### < '25년 재외 한국학교 실태점검 대상교 >

구분	연번	학교명	소재국	학생수(명)	재정규모(USD)
현장점검	1	상해한국학교	중국	865	11,493,312
	2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싱가폴	309	11,594,722
	3	천진한국국제학교	중국	367	6,033,097
	4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중국	722	5,550,671
	5	홍콩한국국제학교	홍콩	129	3,023,213
서면점검	6	교토한국국제학교	일본	165	6,767,530
	7	동경한국학교	일본	1,400	10,190,591
	8	무석한국학교	일본	449	4,433,103
	9	오사카금강국제학교	일본	301	5,653,072
	10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베트남	2,069	12,496,987

※ 학생 수 및 재정 규모는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 대상교 재정현황

- 실태점검 대상 10개교의 세입·세출 총액은 USD 77,236,298임

1	2	3
법인회계 USD 1,014,495 한화 1,483,190,909원	교비회계 USD 74,147,530 한화 108,403,688,215원	발전기금회계 USD 2,074,273 한화 3,032,586,83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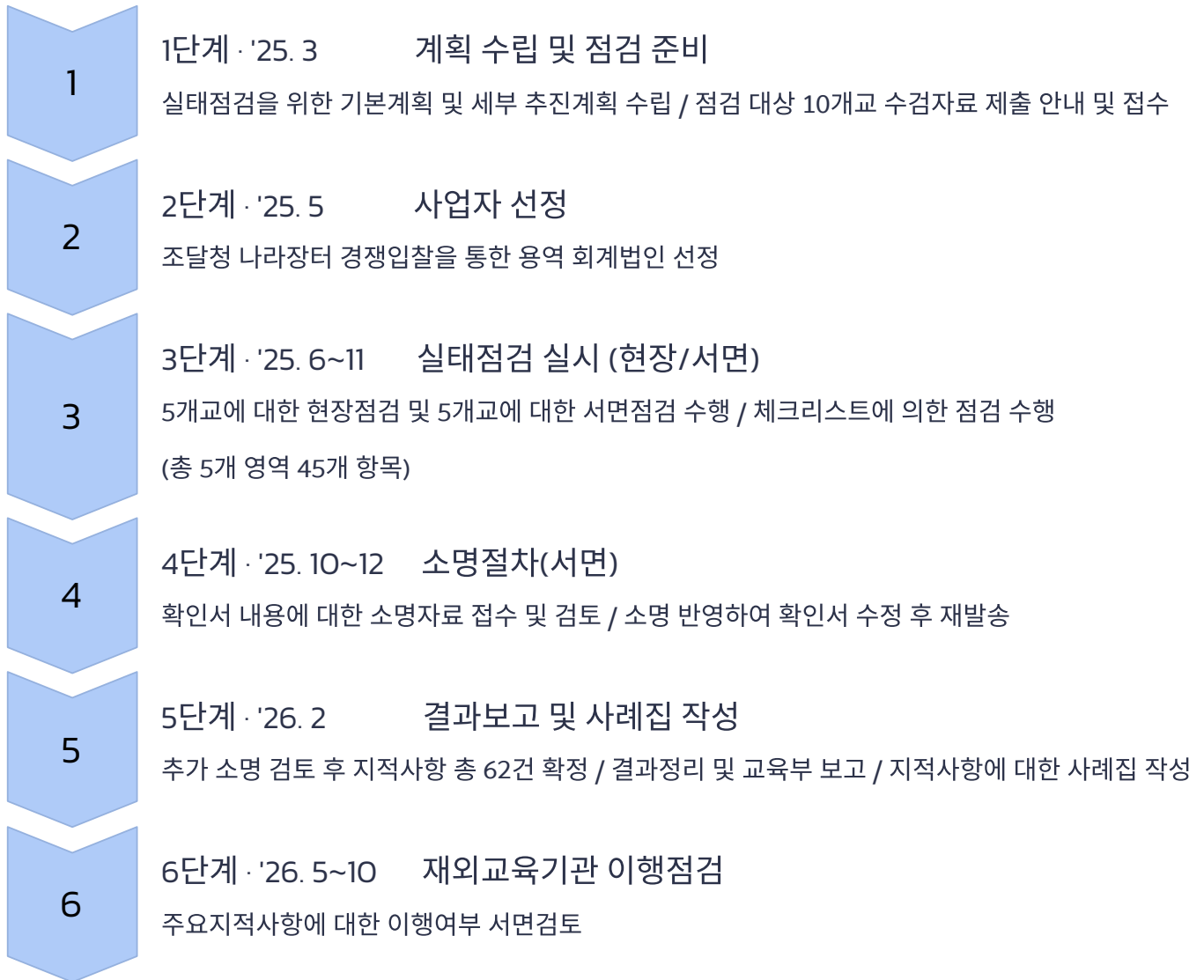
※ '25.2.28. 외환은행 고시 최종환율 기준(USD 1 = 1,462원)

### < '25년 재외 한국학교 실태점검 대상교 재정 현황 >

(단위 : USD,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분	학교명	법인회계	교비회계	발전기금회계	합계
현장	상해한국학교		11,450,830	42,482	11,493,312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818,768	10,724,901	51,053	11,594,722
	천진한국국제학교	18,089	5,288,322	726,686	6,033,097
	칭다오청운한국학교		5,521,411	29,260	5,550,671
	홍콩한국국제학교		3,023,213		3,023,213
서면	교토한국국제학교		6,767,530		6,767,530
	동경한국학교	177,638	9,965,376	47,577	10,190,591
	무석한국학교		4,412,625	20,478	4,433,103
	오사카금강국제학교		5,501,299	151,773	5,653,072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11,492,023	1,004,964	12,496,987
	<b>합계</b>	<b>1,014,495</b>	<b>74,147,530</b>	<b>2,074,273</b>	<b>77,236,298</b>

### 3. 업무 단계별 추진 내용



## 4. 주요 점검 항목

### 1) 유형별 점검 항목

(총 5개 영역 49개 점검 항목으로 실태점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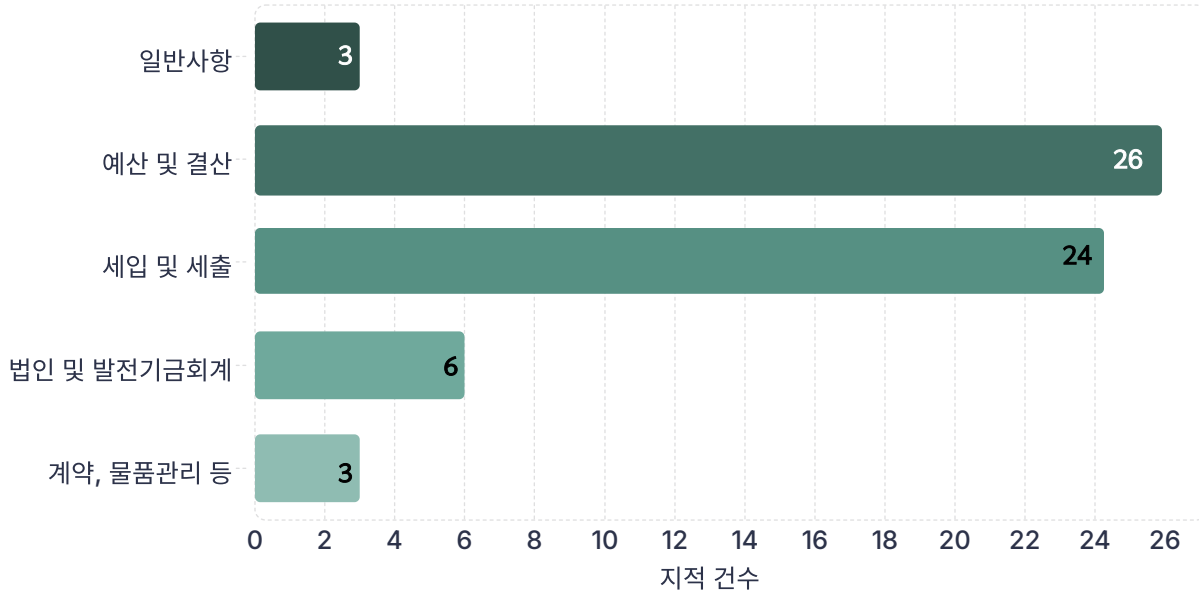
영역	세부구분	전체항목	서면점검항목	주요 점검항목
일반사항		6개	4개	현금의 보관 및 사용 적정성
예산 및 결산	예산	8개	8개	예산 총계주의 준수 여부
	결산	9개	9개	불부합조서 작성 및 보고
세입 및 세출	세입	6개	4개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및 수납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리의 적정성
	세출	9개	6개	규정에 없는 수당 및 인건비 지급, 자산취득비 지출의 적정성
법인회계 및 발전기금회계		9개	3개	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계약, 물품관리 등		2개	1개	계약의 원칙 준수 여부, 물품 및 재산 관리의 적정성
<b>합계</b>		<b>49개</b>	<b>35개</b>	

### 2) 2025년 점검범위 : 최근 3개년(2022~2024회계연도) 점검 수행

## II. 2025년 실태점검 주요 점검 사례

### 1. 유형별 지적 현황

#### 1) 지적 사항의 유형별 구분(총 62건)



#### 2) 주요 지적 사례 건수(총 20건)

구분	점검 항목	건수
일반사항	학교 및 학교 법인 운영 관련 적정성	2건
예산 및 결산	예산서 확정 및 제출기한 준수 여부	2건
	예산의 초과집행 여부	1건
	적립금 적립 및 사용의 적정성	1건
	결산서와 부속명세서 작성 및 보고의 적정성	4건
	이월금 구분 관리의 적정성	1건
세입 및 세출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1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2건
	수익자부담경비 관리의 적정성	2건
발전기금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2건
물품관리	물품 및 재산 관리의 적정성	2건
합계		20건

## 2. 점검 항목별 점검 사례

### [ 일반 사항 ]

#### 점검항목 1-1-1. 회계 구분의 적정성

관련규정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장 제12호

##### 한글학교 이전 비용 교비회계 지출의 부적정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장 제12호에 따라 교비회계 수입은 차입금 상환이나 학교 법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이사회 운영비 지원 외에는 타 회계로 전출·대여할 수 없음에도, ○○한국학교는 별개의 기관인 ○○한글학교의 이전비용으로 2025년 3월 13일 CNY 3,170을 교비회계 내 학교운영비(일반운영비\_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 재외한국학교의 회계는 법회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점검항목 1-1-4. 이사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관련규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이사회 운영의 행정적 절차 미흡

**발견내용 :**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고, ○○한국학교 정관 제13조에 의거해 이사장 포함 이사 11인, 감사 2인으로 구성 및 임기 만료 2개월 전, 결원이 생긴 경우 2개월 이내에 총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1년 4월 1일~2023년 3월 약 2년간 추천직 이사 5인 중 1인의 이사 취임 미구성 및 2022년 이사회 임원인 감사 사퇴에 따른 해임 승인 신청 절차 없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행정적 절차의 미이행 사실이 존재함

**개선사항 :**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자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함

## [ 예산 및 결산 ]

### 점검항목 2-1-3. 예산 확정 및 제출 법정기한 준수 여부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관할청 보고 누락

**발견내용 :** ○○한국학교는 2022, 2023, 2024 회계연도에 본 예산 편성 후 예산변경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성하였으나 제출기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부 및 관할공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개선사항 :** 학교법인 및 학교는 추가예산 편성에 있어,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 및 관할공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서 제출 시 부속 서류 미제출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제39호 및 제45호에 따르면, 예산서 제출 시 이사회 회의록·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부속서류를, 결산서 제출 시에는 이사회 회의록·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2022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예산서 제출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감사보고서 등의 필수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 학교법인 및 학교는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 및 관할공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점검항목 2-1-6. 예산 초과집행 여부

관련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제20조,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제10조

#### 예산 초과 집행 및 추가경정예산 미보고

**발견내용 :** ○○한국학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SGD 10,918,750) 대비 일부 계정과목에서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2022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부 및 관할공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규모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과부족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의 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성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 및 관할공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점검항목 2-2-3. 불부합 조서 작성 및 보고의 적정성

관련규정: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제46호

### 불부합조서 작성 오류

**발견내용:**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제46호에 따르면, 결산서상 다음연도이월금과 현금·예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불부합조서 및 불부합 명세표를 작성·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다음연도 이월금과 현금·예금잔액명세서 잔액 차이는 HKD 1,081,983.66이나 불부합조서상 동 사항에 대한 차이는 HKD 726,879로 HKD 355,104.66의 차액이 발생함 현장 조사 시 학교 측은 기재 오류라 설명하였으나, 불부합 금액에 대한 발생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음

**개선사항:** 결산서 상 다음연도이월금 금액과 현금 및 예금 잔액이 다른 경우에는 불부합 사유를 기재한 불부합 조서와 불부합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불부합 명세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점검항목 2-2-6. 적립금(퇴직적립금 포함) 적립 및 사용의 적정성

관련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및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5장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관련 회계처리 오류

**발견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및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5장 제6호에 따르면 적립금은 적정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과 그 결과를 교육부 및 관할 공관에 적정히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2022~2024회계연도 적립금 적립 및 사용액을 세입·세출외명세서에만 작성하여 상호 불일치 및 결산(부속)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5장 제9호에 따라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을 적립금 전출액 과목으로 세출 처리해야 함에도, 2022~2024회계연도 적립금 이자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세입·세출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함

**개선사항:** 적립금의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해당 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결산서 작성 시 세출 항목 중 적립금 전출액(퇴직적립금의 경우 인건비 과목)으로 처리하여 해당 적립금에 적립하여야 함

## 점검항목 2-2-8. 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3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장

### 결산 이월금 불일치

**발견내용 :** ○○한국학교는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다음연도 이월금 SGD 1,674,504와 2022회계연도 잔액 SGD 1,601,132 간에 SGD 73,372가 불일치하며,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다음연도이월금이 SGD 919,425와 2023회계연도 잔액 SGD 919,785 간에도 SGD 360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개선사항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 지침」 제3장 제23호에 따르면, 다음연도이월금은 다음연도이월사업비와 다음연도이월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32호에 따르면 지난연도이월금은 지난연도이월사업비, 지난연도이월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되고 지난연도이월순세계잉여금은 지난연도로부터 이월된 세계잉여금에서 지난연도이월사업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전년도의 다음연도이월금과 당해연도의 지난연도이월금은 같은 금액으로 구성되어야 함

### 결산 이월금 불일치 및 이월사업비명세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장에 따라 전년도 다음연도이월금과 당해연도 지난연도이월금을 동 금액으로 구성하고, 이월사업비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이월사업비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비회계 2022회계연도 다음연도이월금과 2023회계연도 지난연도이월금이 CNY 558,986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일치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22, 2024년 이월사업비가 존재함에도 이월사업비 명세서를 미작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서 상 전년도 이월비(CNY 303,838)와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명세서(CNY 108,205) 사이 CNY 195,633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 지침」 제3장 제23호에 따르면 다음연도이월금은 다음연도이월사업비와 다음연도이월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32호에 따르면 지난연도이월금은 지난연도이월사업비, 지난연도이월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되고 지난연도이월순세계잉여금은 지난연도로부터 이월된 세계잉여금에서 지난연도이월사업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전년도와 다음연도이월금과 당해연도의 지난연도이월금은 같은 금액으로 구성되어야 함

###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작성 및 공시 오류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제41호에 따라 심의·확정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해야 함에도, ○○한국학교는 2022회계연도 결산 상 시설(대수선)비 수입이 CNY 14,680,689임에도 홈페이지에 CNY 10,300,689로 공시하여 CNY 4,380,000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간 공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결산서와 일치하여야 함

## 점검항목 2-2-9. 이월금 구분 관리의 적정성

관련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및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및 제3장

### 이월사업비 계정분류 오류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및 제3장 제43호에 따르면, 다음연도이월사업비는 성격에 따라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구분해야 하지만, ○○한국학교는 이월사업비의 명시이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처리한 사실이 존재함

**개선사항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및 제3장 제43호에 따르면, 다음연도이월사업비는 성격에 따라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구분해야 함

## [ 세입 및 세출 ]

### 점검항목 3-1-3.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관련규정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6장

####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명세서, 미수액 관리대장 미작성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6장 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된 세입금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미수납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징수결정하고, 이월 처리된 미수납금 관리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하나, ○○한국학교는 2022~2024회계연도 세입결산명세서상 각각 CNY 242,811, CNY 130,513, CNY 126,862의 수업료 미수액이 존재함에도 결손처분 및 미수액 명세서를 작성·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개선사항** :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지난연도수입' 과목으로 이월·징수결정하고, 학생별 인적사항 및 독촉 내역을 기록한 미수납금 관리부 및 미수액 명세서를 작성·관리해야 함

### 점검항목 3-2-5.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장

####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발견내용** : ○○한국학교는 2022~2024회계연도 총 CNY 64,593을 불분명한 목적 및 미확인 수취인 대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존재함

또한, 2025년 9월 11일 학교 행사 또는 주말 미팅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대외기관 협력방안 협의 명목으로 협의 결과의 증빙 없이 CNY 297을 식사비로 지출하였으며 2025년 8월 업무와 별개의 골프대회찬조금 CNY 1,000을 개인에게 업무추진비로 현금 지급한 사실이 존재함

**개선사항** :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기념품, 선물 비용이나 임의 단체의 회원 회비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 지출을 즉시 중단하고 학교 운영 목적으로만 집행해야 함

####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규정 미비

**발견내용** : 학교 지출은 근거와 증빙에 의해 결의·집행 되어야 하고,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도록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내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한도와 대상을 정한 내부 통제 규정을 수립하고, 예산 배정 시 관련 업무 수행하는 자에게만 편성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점검항목 3-2-7.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반납의 적정성

관련규정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결과 미공시

**발견내용** : ○○한국학교는 2022~2024회계연도 수익자부담경비 사업 중 학교 급식, 방과후 학교활동 사업비 등 총 14건, CNY 29,108,476에 대한 정산결과의 미공개 및 지연 공개한 사실이 존재함

**개선사항** :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함

### 수익자부담경비 정산자료 불일치 및 미공시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 제32호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경비는 사업 종료 후 기한 내에 정산하고, 학부모에게 내역의 공개 및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학교는 세입·세출내역누락 및 2023~2024회계연도 수입·지출이 불일치한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함

## [ 법인 및 발전기금회계 ]

### 점검항목 4-2-2.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관련규정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4장

#### 발전기금회계 관리 및 운영의 부실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4장 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조성·운용·회계 관리 사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2022~2024회계연도 발전기금회계 세입 및 세출 예·결산서를 편성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기부자의 기부확약서 미확인 및 기부금 용도별 구분없이 일괄 관리한 사실이 존재함

**개선사항** : 학교발전기금은 조성 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부자로부터 기탁서를 청구하고 접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또한 발전기금회계 세입 및 세출 예·결산서는 교육부 및 관할공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점검항목 4-2-3. 발전기금 회계장부 작성의 적정성

관련규정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4장

#### 학교발전기금 접수 내역 미공시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4장 제20호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기탁일자·기탁자·사용용도·금액 등 접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부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함에도, ○○한국학교는 2024년 12월 이후 수취한 발전기금 내역부터 홈페이지 공개 및 기탁서 관리를 시행했으며, 그 이전에 수취한 발전기금 14건(CNY 102,946)은 공개 및 기탁서 없이 관리한 사실이 존재함

**개선사항** : 학교발전기금은 조성 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부자로부터 기탁서를 징구하고 접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 물품 및 재산 관리 ]

## 점검항목 5-1-2. 물품 및 재산 관리의 적정성

관련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0조 제4항,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8장

### 물품 및 재산관리 부적정

**발견내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0조 제4항,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8장 제6호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전체 비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재물대장에 반영하여 자산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나, ○○한국학교는 2010년 취득한 19인승 버스가 2019년 2월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2년 7월에 폐차 대기 중인 것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2020년~2021년 구입한 노트북 87대 중 5대를 분실한 사실이 존재함

**개선사항 :** 학교는 비품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체 재물조사를 실시해분실·폐기 등의 자산변동사항을 장부에 반영해야 함

### 취득 자산의 물품 대장 미작성 및 재물조사 미실시

**발견내용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장 제36호 및 제8장 제6호에 따르면, 내구성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소모성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은 소모품비로 인식하고, 2년에 1회 이상 비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재물대장 등에 반영해야 하나, ○○한국학교는 도서구입비와 자산취득비 총 HKD 120,688.65가 있으나 2022년도부터 감사일까지 취득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미실시와 비품관리대장 미제출 등으로 자산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사항 :** 학교는 비품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체 재물조사를 실시해분실·폐기 등의 자산변동사항을 장부에 반영해야 함

본 사례집은 **2025년 재외교육기관 회계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총 10개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62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이 26건(4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각 재외 한국학교는 **본 사례집을 참고하여, 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